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규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31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발의자: 김규남, 고광민, 곽향기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태,
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문성호, 박춘선,
신복자, 이성배, 최민규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현재 서울시는 제대군인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미국과 달리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며, 3대째 병역을 이행한 병역명문가만이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및 면제혜택을 받고 있음.
- 이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물론 중기복무,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서울시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제대군인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전역 후에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람료 감면 대상에 제대군인을 추가함(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대군인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.	제6조(관람료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2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~ 12. (현행과 같음) <u>13.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 대군인</u>
<u>13. (생 략)</u> ② (생 략)	<u>14. (현행 제13호와 같음)</u> 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6조(관람료 감면) 제1항제13호	△	제대군인 대상 서울시립과학관 관람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가 발생하나 수혜대상(Q)에 대한 정보가 적어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 ⇒ 다만, 간접적 산출을 통한 자체추계 시 연평균 25,740천원 ¹⁾ 감소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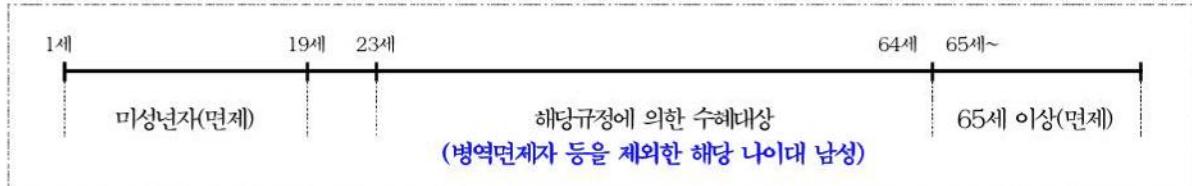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안 제6조(관람료 감면)제1항제13호에 따른 제대군인 대상 관람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액은 국가보훈부 및 서울시 관련부서(비상기획관, 복지실 등) 문의결과 비용추계를 위한 수혜대상(Q) 정보가 적어 현 시점²⁾에서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
 - [규정의미]³⁾ 인용법령인 「제대군인법」에 따르면 장기, 중기,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친 자를 의미하며 해당규정은 이들에 대한 감면을 주된골자로 하는 것으로 파악됨

※ 수혜대상 추정



주 : 통상 전역 첫 해인 23세부터 64까지의 남성 중 면제자 등을 제외한 대상에 대한 지원으로 가정

자료 : 재정분석담당관 작성

- 1) [임의가정에 따른 정합성 오류가능성 존재] 본 추정금액은 전제요소를 임의로 가정하여 대략의 규모를 산출한 것이므로 실제 수혜대상 수, 수혜대상의 이용률 등에 따라 실감소액과 추계액 간 낮은 정합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
⇒ 따라서 해당금액은 대략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
- 2) [사유서 작성일] 2025. 4. 4.(금)
- 3) [규정의미]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제1항제1호에 따르면 군 또는 공의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현역(보충역 포함) 외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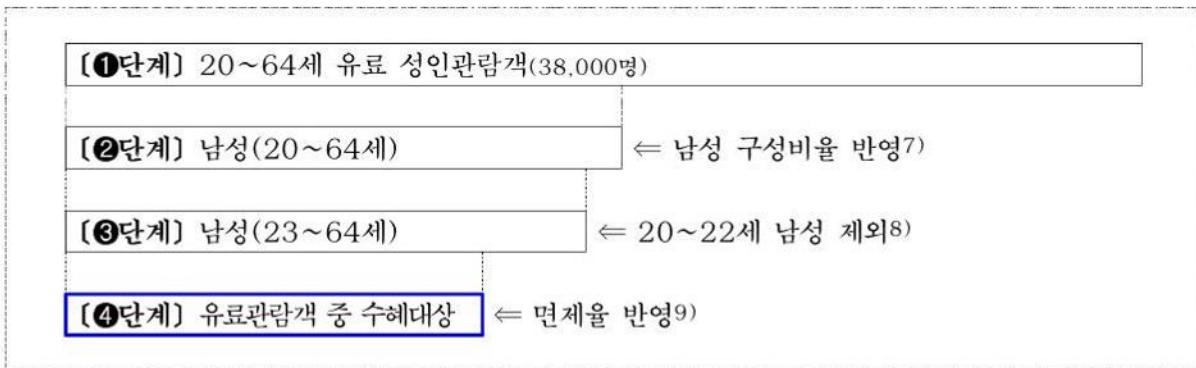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

-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7. 11.>
1. “제대군인”이란 「병역법」, 「군인사법」 또는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군 또는 공의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[퇴역 · 면역(免役)]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한 사람을 말한다

- 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 제대군인 대상 관람료 감면에 의한 세입감소액을 추정하려면 우선 규정의 의미를 파악하고, 그에 따른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대상에 대한 통계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, 국가보훈부4) 및 서울시 관련부서의 경우 현재로선 별도 통계를 보유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간접적 산출을 통한 추정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임
- [자체추정 금액] 다만, 간접적 산출을 통한 자체 추계 시 연평균 25,740천원 감소예상

자체추계

- 추계접근 방안
 - 수집가능 정보5)를 토대로 인구구성비를 활용6)한 간접적 산출
- 산출내역
 - 산출단계(① ~ ④단계)



$$\begin{aligned}
 - \text{산출산식} &= 25,740\text{천원} \\
 &= \text{유료관람객 중 수혜대상} \times \text{관람료} \\
 &= \{(14,300명 \times 80\%) \times 2000\text{천원}^{10}\} + \{(14,300명 \times 20\%) \times 1000\text{천원}\}
 \end{aligned}$$

- [제대군인 관련 자료협조 문의결과] 국가보훈부 문의결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통계는 현재 전역 후 등록한 자에 대한 통계(지원대상 파악용)만 보유하고 있고, 등록하지 않은 제대군인에 대한 통계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
⇒ 참고로 e-나라지표의 제대군인 현황은 매년 전역하는 자의 통계로 제대군인 총 인원에 대한 정보는 아니며, 이에 문의결과 서울시 거주 장기복무 제대군인(등록자)은 현재 12,000명(2025. 3월 기준)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됨
- [수집가능 정보]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등
 - 서울시립과학관 연간 총 관람객 : 169,619명(유료관람객 38,000명)
 - 서울시립과학관 연간 성인 관람객 : 67,176명
 - 서울시립과학관 입장료 : 성인 2,000원(또는 1,000천원)
 - 2025년 23~63세까지 서울시 남성 현황 : 2,945,418명 ⇒ 산식(2,945,418명 × 면제율)을 통해 대상추정
- 서울시 남녀구성 비율 및 남성 연령대별 구성비율 등을 활용하여 추계함
⇒ 다만, 서울시립과학관 관람객 중 성별, 연령대의 기여도 반영하지 않아 실감소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
- 20~64세 서울시민 남녀구성 비율 반영
⇒ 남 3,075,885(약49%) / 여 3,218,758(약51%)
- 20~22세 차지비율을 반영하여 면제대상에서 제외(20~64세 연령대 중 4%를 차지)
- [면제율 적용] 1980년대~최근까지 면제율(현역 및 보충역이 아닌 자에 대한 비율)이 상이하여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평균적인 면제율을 적용(평균 20%)하여 산출
⇒ 최근의 경우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처분이 5%내외이지만 과거 1980년대(64세 기준)의 경우 30%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어 평균적 기준으로 산출하였기에 향후 보다 정확한 정보가 확보될 시 현 추정액과 달라질 수 있음
- 보유정보를 토대로 유료관람객의 약 80%는 2천원, 그 외 20%는 단체관람 및 기후동행카드 등 사용으로 1천을 지불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

○ 산출한계

- 임의가정을 통한 산출이자 서울시민 외 타지역 관람객을 미반영하였기에 이 점을 유의하여 대강의 규모를 과악하는 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당관 주병준

추계세제팀장 김중현

추계분석관 손제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